

[홍콩/중국]2017년 2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2017년 중국 관세조정방안)

○ 수입관세율

(1) 최혜국세율

(가) <중국 WTO가입 관세양허표 수정안>에 열거된 정보기술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속 최초 세율인하를 시행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제2차 세율인하를 실시함.

(나) 2017년 1월 1일부터 822개 수입상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수입상품 잠정세율의 상품범위를 805개로 축소함.

(2) 관세쿼터(할당)세율

소맥 등 8종 상품은 권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율은 불변함. 이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함.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함.

(3) 협정세율

중국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관련국가(지역)에 협정세율을 적용함.

(가) 중국과 호주, 파키스탄, 스위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한국, 뉴질랜드, 페루의 FTA 및 홍콩, 마카오의 경제무역협조협약하의 일부상품의 협정세율 재 인하함.

(나) 중국과 아세안, 칠레, 싱가포르의 FTA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해협양안경제협력프레임협약(ECFA)하의 상품은 계속 협정세율을 적용함. 상품범위와 세율 수준은 변함없음.

(4) 특혜세율

최빈국에 대해 계속 특혜세율을 적용하며, 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은 변함없음.

○ 수출관세세율

크롬철 등 213종 수출상품에 수출관세를 징수하며, 이중 50종은 잠정세율이 '0' 임.

○ 세칙세목

2017년 중국 수출입세칙세목과 <상품명칭 및 HS제도>는 같이 변동시켰음(첨부참조). 국내수요에 따라 일부 세칙세목에 대해 조정하였음. 변동과 조정 이후 2017년 세칙 세목수는 모두 8,547개임.

□ 시사점

중국 해관총서는 재정부에서 2016.12.25. 발표한 <2017년 관세조정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2016-2017판(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비교대조표> 및 <2017년 세목 중 일부 수입상품 잠정세율표>를 편집하여 별도 공고하였음.

또한,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 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붙임 : 1. 2017년 중국수출입세칙 비교대조표 및 일반잠정세율표
2. 2017년 중국 관세조정 해관총서공고(2016년제89호)

□ 중국 심사기준 및 심리표준 목차

1.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지에 대한 심사
2. 상표 뚜렷한 특징의 심사
3. 동일, 유사한 상표의 심사
4. 입체상표 심사기준
5. 색채조합 상표의 심사
6. 소리상표의 심사
7.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심사
8. 특수표지의 심사
9. 상표 대리기구 상표등록신청의 심사
10. 상표법 제50조에 대한 적용규정
11. 심사 의견서의 적용(141p)
 - (1)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하는 것에 대한 심리기준
 - (2) 피대리인이나 피대표인 상표를 무단 등록하는 것에 대한 심리기준
 - (3) 특정관계자는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심리기준
 - (4) 타인의 앞선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심리기준
 - (5)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심리기준
 - (6)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

□ 상표 브로커 관련 심리기준(발취)

-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이미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174페이지)

<상표법> 제32조: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의 앞선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

1. 머리말

상술한 규정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에 대한 보호를 한다.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등록원칙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결과의 부족함을 보완한다.

상표이의, 등록복심불허 또는 무효선고 안건 심리 중에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와 관련된 문제는 본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별 안건으로 판정한다.

2. 적용요건

- (1) 타인상표는 해당상표 출원일 전에 이미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경우
- (2) 해당상표와 타인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3) 해당상표는 지정한 상품/서비스와 타인상표는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4) 해당상표 출원인이 부당한 수단을 취하는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상표법>제32조 규정에 따라 해당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상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의 판정

- 3.1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란 중국에서 이미 먼저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미등록상표이다. 관련 대중의 판정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하는 것에 대한 심리기준>의 관련 규정에 적용하다.
- 3.2 상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거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해당 상표는 최초 사용시간과 계속 사용상황 등 관련 자료
 - (2) 해당 상표는 지정한 상품/서비스의 계약서, 영수증, 인수증, 은행 청구서, 수출입 증빙서 등
 - (3) 해당 상표는 지정한 상품/서비스의 판매구역 범위, 판매량, 판매경로, 방식, 시장 점유율 등 관련 자료
 - (4) 해당 상표 소유자가 라디오, 영화, TV,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아웃도어 등

매체로 발표한 상업광고, 홍보자료 또는 상술 매제 중에 해당 상표와 관련 논평, 보도, 홍보 등 자료

(5) 해당 상표는 지정한 상품/서비스가 전시회, 박람회, 경매 등 상업활동에 참석한 관련 자료

(6) 해당 상표 수상 등 명예자료

(7) 해당 상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당사자가 제출한 국외 증거자료는 해당상표가 중국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채납해야 한다.

3.3 상표 사용상황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상표표지, 상품/서비스, 사용날짜와 사용자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3.4 상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상표의 출원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상표 출원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의 영향력이 해당상표 등록출원일까지 지속하는 지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4. “부당한 수단” 의 판정

해당상표출원은 부당한 수단을 취한 지를 판정하는 경우,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상표 출원인은 앞선 사용자와 무역거래나 협력관계를 한 적이 있는 경우

(2) 해당상표 출원인은 앞선 사용자와 같은 지역에 있거나 쌍방 상품/서비스가 같은 판매경로와 지역범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해당상표 출원인은 앞선 사용자와 기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고 앞선 사용자의 상표를 알 수 있는 경우

(4) 해당상표 출원인은 앞선 사용자와 내부 인원왕래 관계가 있는 경우

(5) 해당상표 출원인은 부당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앞선 사용자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의 명예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오도홍보를 하고, 앞선 사용자와 같이 무역협력을 협박하며 앞선 사용자나 타인한테 고액의 양도수수료, 허가사용료나 권리침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6) 타인의 상표가 강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상표는 그 상표와 고도 유사하는 경우

(7) 기타 부당한 수단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5. 본 조항 가리키는 경우가 구성여부는 “어느 정도 영향” 의 정도와 “부당한 수단” 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177쪽)

〈상표법〉 제44조 제1항: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 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머리말

등록상표 출원은 신의칙을 준수해야 하고 속임수로 상표행정주관기관을 기만하여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상표등록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 해치고, 공공자원을 부당히 점용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방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정당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한 문제와 관련된 경우 본 기준을 원칙으로 개별 안건판정을 진행한다.

2. 적용요건

2.1 사기수단으로 등록상표를 취득한 행위

이런 상황은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 출원할 때 상표행정 주관기관에게 허위로 또는 사실을 숨기거나, 위조한 신청서나 기타 증명문서를 제출하여 등록상표를 사취한 행위를 말하며 아래에 열거한 상황에 한정하지 않는다.

(1) 신청서 서명날인 위조하는 행위

(2) 출원인의 신분 증명문서를 위조, 수정하는 행위. 가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서 중요한 등기사항을 수정하는 행위를 포함하다.

(3) 기타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

2.2 기타 부당 수단으로 등록상표를 취득한 행위

이런 상황은 상표등록자가 사기수단으로 상표등록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

해치고, 공공자원을 부당히 점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식 등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공이익을 해친 것이다. 특정 민사권익만 침해하는 경우 상표법 제45조 및 상표법의 기타 상응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판단을 진행해야 한다.

2.2.1 아래 상황은 본조에서 나오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함”에 속한다.

- (1) 해당상표 출원인은 여러 상표를 신청하고 타인의 뚜렷한 현저성을 가지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이 되는 경우
- (2) 해당상표 출원인은 여러 개 상표를 신청하고 타인의 글자, 기업명칭, 사회조직 및 기타 기구명칭, 지명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 등 구성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 (3) 해당상표 출원인은 대량 상표를 신청하고 진실한 사용의사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 (4)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2.2 해당상표 등록을 받은 후에 해당상표 출원인이 실제 사용행위가 없고 사용준비할 행위도 없으며 부당 이익을 도모한 목적만 있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상표를 매입권유하고, 타인과 무역협력을 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고액 양도 수수료, 허가사용료, 권리침해 배상금 등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진실한 사용의사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2.2.3 해당상표 출원인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상표를 취득한 경우 해당상표 출원인 본인이 출원한 상표에만 한정된 거 아니라 해당상표 출원인과 통모행위를 같이 행하거나 특정 신분관계가 있거나 기타 특정 연락인 출원한 상표도 포함한다.

III 통관문제사례

- 해당사항 없음